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검증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 관련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도화를 촉진

□ 지원 내용

- 전문 민간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한 우수 공급기업을 통해 도입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제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지원 대상

- (공급기업) 민간 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디지털트윈 및 메타팩토리 등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고도화 솔루션 보유·활용 기업

*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투자유치 필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투자약정 체결도 가능. 단, 기간 내 투자유치 실패 시 협약 해약)

-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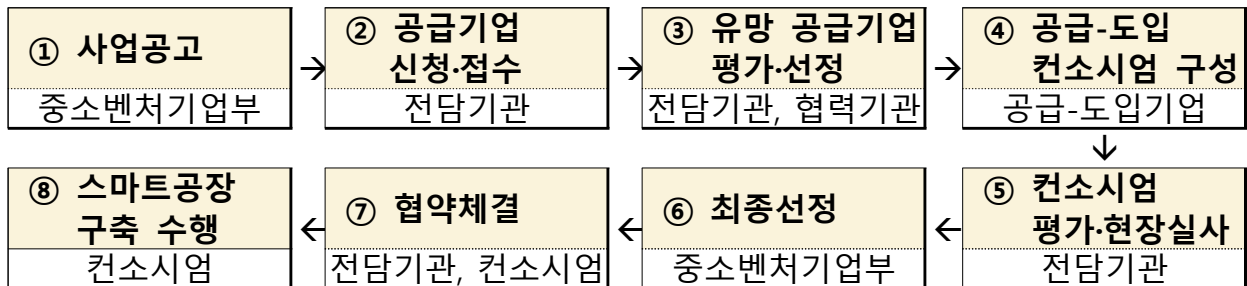
- (지원 규모) 36억원, 18개 과제
-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50%(2억원) 이내

스마트화 목표 수준		정부지원(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중간1)	2억원	9개월

* 수준향상없이 재신청하는 경우(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고도화 동일수준 과제로, 0.5억원(6개월) 지원

□ 지원 절차

- 투자유치에 성공한 유망 공급기업 선정 후, 공급기업별 배정 T/O에 맞춰 공급-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전담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기정원 부설), 협력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추진 체계 및 역할



- (전담기관) 사업 및 예산 관리, 공급기업 및 지원과제 선정·관리 등
- (협력기관) 공급기업 선정평가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발굴·홍보 등

II. 공급기업 모집 및 선정

□ 선정 규모 : 9개사 내외

□ 지원사항 : 선정 공급기업별 최대 2개 과제 지원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참여물량을 축소·조정

□ 신청 자격

- 전문 민간투자사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공급기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투자(또는 6개월 이내 투자약정 체결) 유치 확인 공급기업
 -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디지털트윈 및 메타팩토리 등 보유·활용 기술집약 중소·중견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2023년 5월 18일(목) 17시까지
- (설명회) 2023년 4월 21일(금) 14시, 팀스타운 S5(서울 강남)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1	투자연계형 공급기업 신청서
2	투자연계형 공급기업 사업계획서(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6	최근 3년간('20~'22년) 재무제표(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투자 후) 또는 투자계약서(해당시)
9	스마트공장 솔루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 공급기업 선정

- 스마트공장 구축역량 및 보유기술,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공급 계획과 구축실적, 투자유치 규모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9개사 선정

<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정성	구축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20
		스마트공장 공급계획	20
	지속 가능 역량	글로벌 역량	15
		도입기업 지속 지원	20
정량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	10	
	투자유치 규모	15	

Ⅲ. 컨소시엄 구성 및 과제 선정

□ 도입기업 자격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

- 선정된 유망 공급기업 정보를 게시하여 보유 기술, 공정·업종 등을 고려하여 공급-도입기업의 컨소시엄 지원
 - 공급기업 선정 후 유망 공급기업에 대해 도입기업에 정보제공*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기업명, 전문분야, 보유기술 등 공고 예정
 - 도입기업은 공개된 공급기업 정보 확인 및 개별 연락 후 구축 희망 시스템에 대해 협의
 - 공급기업은 협의 내용에 대해 구축지원 및 솔루션 적합여부 등을 판단 및 도입기업 결정
 - 공급-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공동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지원 규모 : 36억원(고도화1 2억원 x 총 18개 과제)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월) ~ 2023년 8월 3일(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5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1년, '22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7	도입기업의 재무제표('21년, '22년)
8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지원과제 선정

○ (과제 평가) 유망 공급-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 서면 및 기술성 평가지표를 준용하여 평가

* 수출, 기업 성장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참여물량(최대 2개)을 축소·조정

<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도입기업 역량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0)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재무 안정성 (15)	◦ 영업이익 증가율((당기 영업이익-전기 영업이익)/전기 영업이익*100)	5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 수출실적 여부	5

○ (현장확인 및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제조현장 및 스마트공장 구축환경 등 대조·확인 후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현장확인 항목 >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IV. 기타 사항

□ 기타 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참여기업(舊,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참여기업 (舊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고도화1·동일수준)
유턴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확인]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3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강소단계 이상 선정기업은 별도 가점 부여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21년까지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또는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기업 포함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1년~'23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 이수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수준확인 (* 가점 5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기술성평가 시 직접 확인)
스마트 생태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
산단대개조 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원전산업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부품·설비 분야 제조기업 * 원자력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발급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단, Q, A 등급에 한함)
유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조선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참여기업 (舊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2에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와 해당 지자체*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 대구 등)에서 인정한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뿌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을 영위하는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위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청년 친화형 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역(대전 대덕구, 경북 영천시)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조성사업 선정지구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s://www.oneshot.or.kr)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FEMS 솔루션 도입	·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 시 FEMS 솔루션 도입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 (붙임1)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총 6개 표준)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상생결제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활용실적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군수품 제조기업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내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 이상 (* 별도 가점 5점 부여)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강소단계 이상으로 선정된 수출중소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기술성평가 시 직접 확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 가점 5점 부여)	· 중소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상시모집에 선정된 위탁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선정기업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과제 수행을 완료한 소공인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명문장수 확인서 제출 필요
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시그니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문의처

구분	기관	연락처
지원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60

①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②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

③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④ (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

⑤ (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CAD, CAM)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에 대한 표준

* 이종 회사의 CAD,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

⑥ (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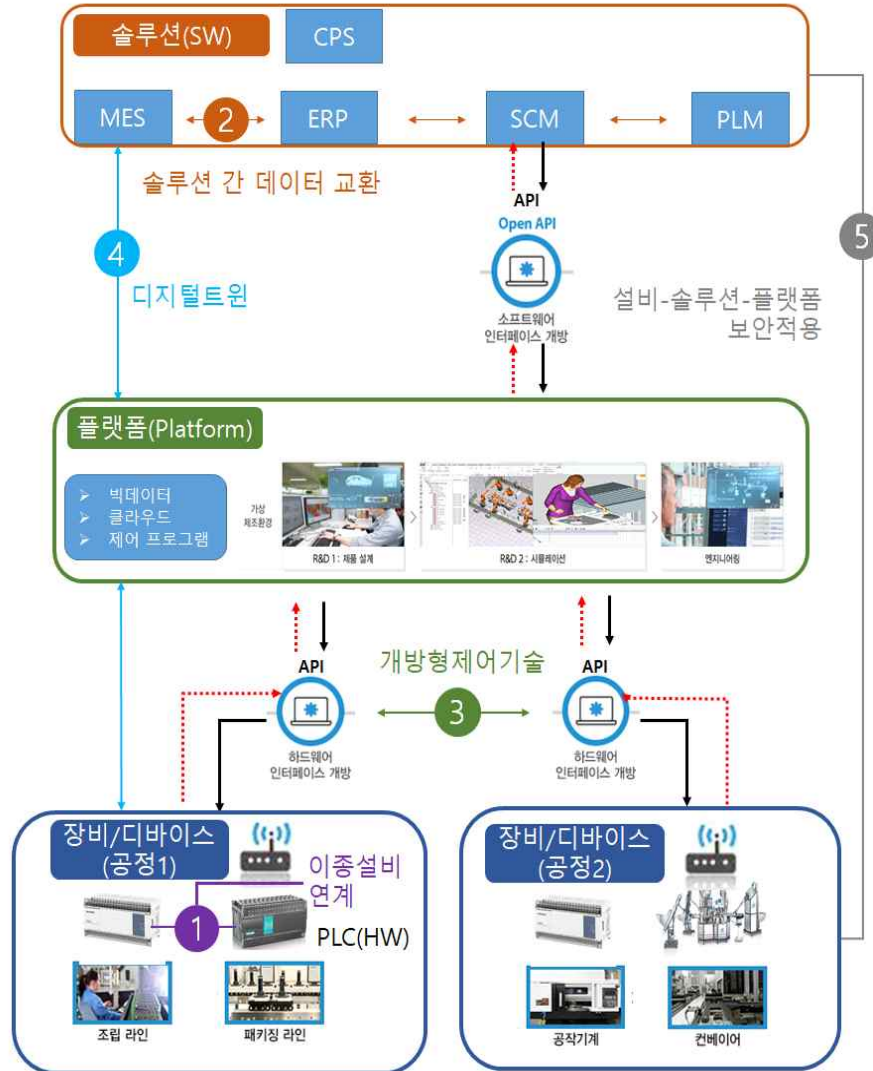
- 설비-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 설비의 데이터를 PLC-제어프로그램-솔루션(MES 등)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MES 등)-제어프로그램-PLC를 제어하는 표준

<그림> 표준 적용 예시

솔루션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MES, ERP, SCM, PLM, WMS, CPS 등)

플랫폼 :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SW, 제어 프로그램, CAD, CAM 등)



붙임 2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